

새롭게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

이 기 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보상전략팀장〉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거의 9백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조만간 1천 만대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문화의 역사가 짧은 탓인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발생률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95년대 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6백70여건의 교통사고로 28명의 사망자와 8백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94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 제도는 자동차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의 변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과 제도는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에 적응하여 바뀌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 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보험 제도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적용이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개선 방향

금번에 개선된 자동차보험제도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3단계 가격자유화계획에 따라 보험회사간의 일률적인 기본보험료를 차량의 용도에 따라 3%~10%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간의 보험료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인배상 I(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대폭 인상(97.8.1)됨에 따라, 대인배상 I(책임보험) 보험료가 인상되고 대인배상 II 보험료가 인하되었으며,

대인배상 I 보험료에도 “우량 할인·불량할증 요율”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가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유발한 사고에 대해 대인 II 사고시 2백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까지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무면허 운전시 면책요건·근로재해 자동차사고시 면책 범위·무면허 및 음주운전 자손사고시 면책범위 등 약관해석 내용과 판례의 내용이 상이해 문제가 되어오던 부분을 정비하여 약관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으며 장례비,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인상 조정하였고, 대차료와 열처리 도장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는 등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세부 개선 내용

가. 보험요율 자유화 실시

'94년 4월 1일부터 가격 자유화 3단계 조치로, 기본보험료에 개인용 ±3%, 업무용 ±5%, 영업용 및 기타 ±10% 범위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회사별로 동일한 기본보험료를 적용해서 최종보험료를 산출하던 방식에서 회사별로 차등화된 기본보험료의 적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본격적인 가격경쟁시대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95년 8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써 '96년 8월 1일 이후 사고 발생분부터 과거 사망 1천5백만원, 부상 6백만원, 장해 1천5백만원이던 대인배상 I 한도액이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만원, 장해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며, '97년 8월 1일부터는 사망 6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6천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대인 I 보험금의 지급 규모는 늘어나게 되고 대인배상 II(종합보험) 보험금의 지급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으로 대인배상 I의 기본보험료가 가입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용도에

따라 차별화 되었으며, 한도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의 적용은 책임개시의 시점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보험료에 대한 할인할증 요소의 도입

'94년 6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종합보험의 기준할인·할증율, 보험가입 경력요율을 대인배상 I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97년 7월 31일 까지 1년간은 종합보험의 할인·할증율, 보험가입 경력요율의 1/2만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부과되는 특별할증은 부과되지 않는다.

라.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배상 II, 대물사고의 면책금 액 공제제도 신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I 손해액 중 사고당 2백만원, 대물손해액 중 사고당 50만원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일종의 사회악이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추방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목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마. 무면허 운전의 면책요건

강화

개정 이전의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인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목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여 면책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약관과 다른 판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한 것이다.

바. 근로재해 자동차 사고의 보상범위 확대

근로재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근로 재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서 피해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하였다.

사. 무면허, 음주운전 자기 신체사고 보상범위의 확대

자기 신체사고에서 무면허, 음주, 약물중독운전 중 사고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그 운전

자 본인의 손해”에만 한정토록 하고 그의 가족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변경하였다.

아. 기족운전자 한정특약상의 “기족”범위의 명확화(개인용)

기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를 명시하고 주민등록법상 동거중인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는 등 “가족”에 대한 용어 풀이를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 ①부모와 양부모
- ②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또는 양부모
- ③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관계 배우자
- ④법률상의 혼인관계 출생자녀, 사실혼관계 출생자녀, 양자 또는 양녀
- ⑤며느리

※동거중인 시부모 및 장인·장모 포함, 동거하지 않는 시부모 및 장인·장모 제외

자. 보험금 지급 기준의 인상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사회현실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지급기준의 여러 항목들을 인상하였다.

①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피해자의 취업가능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

② 사망사고의 장례비를 60



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였다.

③ 사망사고의 위자료를 청구권자에 따라 45만원~1백50만원에서 2백만원~8백만원까지, 장해위자료를 장해정도에 따라 15만원~50만원에서 30만원~8백만원으로, 부상위자료를 부상정도에 따라 6만원~50만원에서 6만원~1백만원까지로 인상하였다.

④ 부상사고의 기타 손해배상금을 입원의 경우 1일당 7천2백원에서 9천원으로 통원의 경우에는 1일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였다.

⑤ 대물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비용의 70%까지 지급하던 것을 80%까지 지급하며, 렌트하지 않을 경우 휴차료의 30%를 지급하던 것을 렌트비용의 20%를 지급하게 되었다.

⑥ 열처리 도장료는 차령 3년 이내에서만 인정하던 것을 승용차의 경우 차령 5년 이내에는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5년 초과 1년마다 10%씩 체감하여 지급하며, 기타 차종의 경우 차령 3년 이내에는 전액을 3년 초과 1년마다 10%씩 체감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차. 자기 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한도가 10만원~3백만원에서 20만원~6백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위와 같은 지급기준의 인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금은 년간 약 1천3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으며 보험회사의 내부 경영합리화, 보험금 누수방지 노력 등으로 흡수토록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